

III. 취급설명서와 제조물책임법

자료제공 · 한국PL센터

이 장에서는 기록 문서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취급설명서에 관해 미국에서는 어떠한 법적 배경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이 진행되어 왔는가를 해설함과 더불어 경고·지시표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취급설명서와 법적 배경

미국에서 취급설명서 등 상품에 첨부된 것과 회사안내, 광고 등 제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법적 의미를 주는 법률이 있다.

- ① 통일상법전(UCC : Uniform Commercial Code)
- ② 직업안전보건법(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③ 모델 제조물책임법(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
- ④ 평이문장사용법(Plain English Act)

1. 통일상법전

미국에서 기록이 법률상의 문제가 된 최초의 동기를 만든 것은 1950년대에 제정을 한 통일상법전이다. 1950년대는 미국의 산업계가 활황을 맞은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생산액,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와 주 사이의 거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국제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했다.

그때까지 각각의 주가 독자적인 입장에서 정했던 상거래의 관습이 거래의 방해물이 됨과 동시에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무역상대국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합중국으로서 통일화된 「상거래를 시행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화」가 시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상사법을 단일화하기 위한 법률 「통일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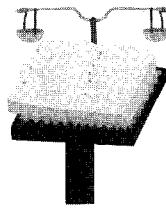
전」을 제정했다. 1960년대에는 루이지애나주를 포함 각 주가 이를 수렴, 실시에 착수하므로써 미국상거래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 통일상법전은 어디까지나 연방정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각주의 상거래 전부가 이 법률에 준거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각주가 갖고 있는 상사법이 상위개념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통일상법전이 제정됨으로써 미국 국내의 상거래에 이용되는 기록문서의 각각의 법적의 미를 갖게 되었다. 이 법률 중 기재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보증 내용, 명시상」이 「명문화된 법적인 상거래의 문장」으로 취급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취급설명서나 사양서 등 상품에 직접 첨부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 국내의 기자회견에서 신문기자나 매스컴 관련자에게 배포되는 보도자료, 더 나아가 광고, 카탈로그, 포스터, 최근에는 TV의 광고 필름, 기타 사내문서인 기획서나 각종 기술문서까지가 「상품의 부속품」이 아니라 「중요한 제품의 일부」로서 취급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그들의 기록 문서 중에 제품에 관해 기재되어 있는 사항 모든 것을 인도하는 보증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의무화 한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 통일상법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갖고 있다.



(1) 협약, 약속, 기술, 견본에 의한 명시보증(2-313조)

- 1) 상인에 의한 명시보증은 다음 사항에 의해 발생한다.
 - (a) 상인이 고객에 대해 약속한 그 물품(사물의 내용을 기록하여 서술하는 것)에 관련한 사실획약 또는 약속으로 거래기초의 일부가 되는 것은 그 물품이 그 협약 또는 약속에 합치한다는 취지에 명시보증을 발행한다.
 - (b) 거래기초의 일부가 되는 물품기술은 그 물품이 그 기술에 합치한다는 취지의 명시보증을 발행한다.
 - (c) 거래기초의 일부가 되는 견본 또는 양식은 그 모든 물품이 견본 또는 양식에 합치한다는 취지의 명시보증을 발행한다.
- 2) 명시보증을 발행하는데 상인이 “근거” 또는 “보증”的 형식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도 상인이 보증을 특별하게 의도한다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단순한 이 물품가치에 대한 협약 또는 그 물품에 대한 상인의 의견과 주장임을 의미한다. (문서·구두에 의한) 진술은 보증발행하지 않는다.

(2) 묵시보증 : 시판성 : 업계의 관행(2-314조)

- 1) (제2-136조에서) 제외 혹은 수정되지 않는 한 그 물품에 시판성이 있다는 보증은 상인이 그 종류의 물품에 관한 매매인 경우에는 그것의 판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에서 그 지역내 또는 기타 장소에서 소비되는 유상식품 또는 음료의 제공은 판매에 해당된다.
- 2) 물품에 시판성이 있으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 (a) 계약기술하에 그 업계에서 이론의 여지없이 통할 것
 - (b) 대체물품인 경우에는 기술범위내에서 공정한 동등 품질인 것
 - (c) 관련물품이 사용되는 통상목적에 적합할 것

(d) 계약에 의해 하용되는 변경범위내에서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모든 유닛트 중에서 균등한 종류, 품질, 수량을 다룰 것

(e) 계약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이 되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을 것

(f) 용기 또는 라벨에 적혀진 약속 혹은 사실의 협약에 따를 것

3) (제2-136조에서) 제외 혹은 수정되지 않은 한 거래의 경위 또는 업계의 관행으로부터 상기 이외에는 묵시보증이 생긴다.

(3) 묵시보증 : 특정목적에의 적합성(2-315조)

상인이 계약시점에 그 물품에 요구되는 특정목적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고 고객이 적절한 물품을 선정 혹은 설치하는데 상인의 기량 또는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항하에서 제외 혹은 수정되지 않는 한 그 물품은 그 목적에 적합하다는 묵시보증이 존속한다.

2. 직업안전보건법

미국 국내의 일반 사무소나 공장 등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위생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 닉슨대통령 정권하인 1970년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첨부된 취급설명서(매뉴얼)은 법적으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1960년대에 실용단계가 된 통일상법전에 70년대에 직업안전보건법이 추가됨으로써 상품에 첨부된 취급설명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수출상품에 첨부된 제품에 관해 기재된 모든 기록문서는 법률과의 상관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3. 모델제조물책임법

이미 설명한『모델제조물책임법』은 제104조에 제조물책임의 대상인 제품의 결함을 다음의 4종류로 하고 있

다.

- ① 설계상 결함
- ② 제조상 결함
- ③ 경고(Warnings) 또는 지시(Instructions) 결함
- ④ 명시보증(Express Warranty)에 합치하지 않는 결함

이 중에서 문서와 직접관련된 결함사유는 ③과 ④이다.

(1) 경고 · 지시의 결함

경고(Warnings) 혹은 지시(Instructions)에 관한 모델제조물책임법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 그 제품과 관련있는 위험 혹은 그 제품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위험에 대해 적절한 경고 혹은 지시가 없었던 경우, 그 제품은 비합리적으로 위험하다.
- ② 그 제품의 예상되는 사용자에 대해 예상되는 그 제품이 갖는 위험성 및 잠재적인 유해성이 중대하면 할수록 경고할 의무가 중대하다.
- ③ 적절한 경고 혹은 지시가 없었던 경우의 예로서
 - 기재되어 있는 경고 혹은 지시가 불명료하거나, 혹은 경고 또는 지시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
 - 기재되어 있는 경고 혹은 지시가 목적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2) 명시의 보증위반

통일상법전의 2-313조에도 나타낸 것처럼 이 법률중에서, ① 상인이 고객에 대해 제품에 관한 사실화약(affirmation) 또는 약속(Promise) ② 제품에 관한 기술(Description) ③ 견본(Sample)이나 모형(Model) 중 어느 것인가가 제시하는 판매행위(상거래)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 판매된 제품과 합치해야 한다. 이를 「명시보증」이라 한다. 따라서 이 명시한 것을 보증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제품은 「결함품」이라 판정된다.

『보증』이라는 단어는 개별의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

을 할 수 있다. 결국 「구두에 의한 보증」은 보증서에 비해 효력이 훨씬 약하므로 보증내용은 문서로 해둘 필요가 있다. 이는 후일 문제가 될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판매점의 보증」이지만 이는 판매하는 제품과 품질에 관해 판매점이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 보증서에는 일반적으로 「묵시보증」「명시보증」의 2가지가 있다. 묵시보증은 판매점에 그 제품을 팔 권리가 있다는 것, 그 제품이 상식적으로 보아 설명대로이고 좋은 상태이고, 기재된 목적에 맞는 것임을 보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토스터의 경우 뺨을 구울 수 없다면 제품이 아니다. 소비자에게 이런 약속을 명시하지 않아도 약속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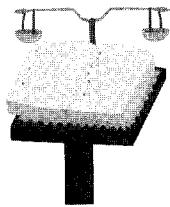
한편 「명시보증」이란 제품의 기능과 품질에 관한 명쾌한 약속을 말한다. 명시조건 혹은 명시보증은 메이커나 판매점(어떻든 약속한 당사자)에 그 약속의 이행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또 상인이 고객에 대해 시행한 「화약」「약속」 혹은 「기술」한 것으로 상인 그 행위 자체가 명시한 것을 보증한 것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명시된 것」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불이행한 경우에 결함라벨로서 또는 결함제품으로 판결을 받게 된다.

4. 평이문장사용법

미국에는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적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다」라는 사고방식이 기본이다. 그 사상을 법률로 한 것이 평이문장사용법이다.

이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주에 상품을 수출해 판매하는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취급설명서에 쓰여 있는 영문이 그 주의 평균적 사용자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결함상품으로 간인 짹혀버린다. 만일 그것이 제조물 책임 소송으로 발전한 경우 설명이 법률 적용이 없는 주에서는 승소해도 이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주에서는 「취급설명서의 불비」로 폐소할 가능성이 있다.



■ 경고·지시와 결함에 의한 소송 사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취급설명서에 결함이 있으면 제품자체에 아무런 결함이 없어도 결함제품으로 판정해 버린다. 그중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이 취급설명서의 경고·지시결함이다. 다음에는 이 경고·지시에 의해 실제 어떤 소송이 시행되었는지를 살펴 보자.

1. 경고에 관한 기재가 없었던 경우

플라스틱 사출형성기의 메인터너스 중 용해된 플라스틱이 분출해 종업원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종업원은 사출형성기 메이커에 대해 조작과 메인터너스에 관한 적절한 설명이 취급설명서 중에 없었다. 그래서 용해한 플라스틱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취급설명서 중에 경고하지 않았다고 메이커에 소송했다.

이는 1980년 일리노이주 항소심 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이다. 여기서 원고측이 주장하는 취급설명서는 엄밀하게 서비스매뉴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중에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주의사항과 그 경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초보적인 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는 명백히 원고측의 승소이며 고액의 손해배상이 평결되었다.

2. 경고는 되어 있었지만 오해를 줄 표현이었던 경우

차를 구입한 아들이 취급설명서를 읽으면서 차에 트레일러 견인차의 연결장식을 부착하고 있었다. 이때 실수로 차의 연료탱크를 고정하고 있던 볼트를 빼버렸다. 이로 인해 차에 화재가 발생, 아들이 불에 타 사망했다. 유족은 「이 취급설명서에 기재요령이 잘못되어 조작 도중에 가솔린 탱크의 고정볼트를 빼지 않으면 연결장식을 부착할 수 없는 것처럼 읽게 된다」고 메이커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969년 텍사스주 항소심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이다. 이 재판결과는 「취급설명서의 기재내용은 사용자의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상의 2가지 경우에는 취급설명서의 작성법, 표현방법, 언급의 문제가 소송의 실마리가 되어 그 결과 제조자인 메이커의 패소라는 사건이다.

3. 경고가 불충분하다고 지적된 경우

담배를 계속 피워 폐암에 걸린 부인과 그 남편이 담배회사를 고소했다. 원고인 부인은 20년간에 걸쳐 담배를 피워왔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① 담배의 피해(계속 피우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날조하고 아주 안전한 것처럼 제품의 품질에 대해 고의로 허위 표시를 계속해 이용자를 기만해 왔다.

② 흡연의 피해(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피우면, 폐암이 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도 없고 이 경고의무위반이 폐암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③ 1966년(동년 미국에서 담배의 피해에 대해 담배케이스에 경고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전에는 앞서 거론한 담배회사는 「자사의 담배를 피우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며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강조하는 광고·선전을 했었다. 이는 명백히 명시보증이고, 보증위반이다.

이 재판에서 원고측 주장의 일부가 인정되어 남편(부인은 사망)은 배상금 40만달러를 받았다. 이 판결이 내려진 평결부분이야말로 현재 미국의 재판환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이다.

재판소는 원고가 이 재판에서 제소이유로 한 ①의 사실·공모사실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②의 경고의무를 태만시한 점에 대해서는 담배회사측의 경고의무

위반의 사실을 인정해 그것이 부인의 폐암사의 원인이 된 점, 그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미국에서는 1966년에 담배의 피해에 대해 케이스에 경고표시의 시행이 의무화되어 그 이후로 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피웠으므로 과실의 80%는 부인에게 있다고 판결을 내려 메이커측이 판정승을 거두었다.

최후의 ③에서 담배회사(Liggett Group Inc.)는 「자사의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강조하는 광고·선전을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광고·선전을 믿고 담배를 피웠다고 하는 원고측의 이의는 올바르다. 메이커의 광고·선전물 중에 명시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메이커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4. 예상되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경우

「슈퍼맨파자마(서양식 잠옷)」를 사서 그것을 착용한 어린이가 TV에서 본 슈퍼맨이 양손을 펼치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처럼 자신도 그것을 실현하려고 옥상에서 추락해 인사사고를 냈다.

성탄절이 되면 어린이용 완구가 야기하는 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그리고 이중 제조물책임소송이 되는 사고의 반수 이상이 취급설명서 등의 경고문 불비, 결함에 의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조물책임 소송을 면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 경고문을 붙이고 상세한 설명문이 장소가 좁아도 적혀져 있어 자칫 경고남용의

부모님께

감수성이 풍부한 자녀가 이 파자마를 입으면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것을 자녀분께 주의하니 해주세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이 사례는 경고문 불비가 지적되었다. 경고문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의 사망사고나 증상을 낳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의류메이커는 앞에 글과 같은 경고문을 표시하게 되었다.

■ 경고·지시표시의 가이드라인

1. 경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3가지 경우

기업이 취급설명서 등의 경고·지시 문제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커측이 도대체 어디까지 경고하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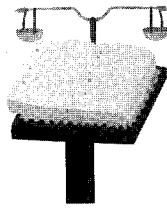
현재 미국의 제조물책임의 재판환경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없다고 하는 쪽이 맞다.

약품이나 식품이라는 특정 제품에는 국가적인 기준이나 규격이 있지만 그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경고를 해야 하는가는 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기준·규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규격협회(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가 현재 광범위한 제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경고에 관한 규격책정 작업에 관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경고문에 불비있다」고 인정되는 몇 가지의 포인트에 대해 판례가 채용하고 있는 사고를 분석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원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경고문 불비에 의한 결함이 있다」고 판정되는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품이 메이커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사용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이용자가 그 제품을 이용하는데 극히 일반적인 사용법(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법에 의한)을 사용했는데 통상의 이용자가 예상조차 하지 못한(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 포함되어 있던 경우



③ 그들의 중요한 위험에 대해 메이커가 적절한 경고를 테면히 한 경우,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이커가 제조물책임대책으로 경고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든 경우를 고려, 무엇이나 경고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품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는 통상의 사용자는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만을 경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 경고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3가지 요건

(1) 통상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형태일 것

경고를 문장이나 또 표시(Mark)로 제품에 게시할 경우 그 게재방법, 이용하는 마크를 표시하는 방법, 선택방법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장소에 게재되거나 또 바로 찢겨져 버리는 부착을 한다든지, 읽어도 알지 못하는 경고문이었다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고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경고는 그 이용되고 있는 환경에서 통상 사람의 주의를 끄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면 안된다.

(2) 통상의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될 내용일 것

경고내용은 평균적인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의 사람에 대해 그 제조물의 「위험한 성격」이나 「그 정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경고가 법적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닌지는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그 제품의 사용환경을 고려한 것인가, 평균적인 이용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1991년 10월 1일부터 경고문은 영어와 불어의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고, EC에서는 실제로 경고문에 의한 효과를 내려한다면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의 4개 국어가 최소로 필요하고 일부에서 러시아어, 더 나아가 그 지역특유의 언어의 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고마크의 통일이야말로 빠져서는 안될 요건이 되고 있다.

기업이 경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써어있는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히 할 것 이상으로 사용자에 대해 예측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주의를 필연적으로 하는 경고가 아니면 안된다. 상인을 포함한 제조사가 완전히 보호되기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성격을 정확히 기술한 경고문이 필요하다.

(3)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

이용자에 대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제시할 것이 필요하다. 경고는 어디까지나 이용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경고를 보고 읽은 이용자가 주의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주의환기의 프로세스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3가지 요건을 갖춘 경고문 사례

전형에서 설명한 3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진 경고문이어야 하는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한다.

원고는 눈에 심한 염증을 느꼈다. 접착제에서 발생한 자극성가스가 원인이라고 알게 되었다. 자극성가스는 공조기의 작용에 의해 원고가 있는 곳까지 흘러 왔다. 이 접착제 용기에 부착되었던 라벨에 기재된 경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위험 : 매우 발화하기 쉬우므로 설명서를 잘 읽고 충분한 환기를 하고 안전을 확인해 주십시오.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에서 자극성이 있는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빌딩의 공조기가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공조장치는 공기를 냉각시키고 순환시킬 뿐으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올 수는 없었다. 그 결과 자극성인

가스는 정도가 약해지지 않고 빌딩안을 계속 순회하고 있었다.

접착제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용인될 수 있는 레벨까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고가 부착되어 있었는지 아닌지라는 것이 재판의 쟁점이 되었다. 특히 이 경고문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먼저 경고의 「충분한 환기를 하고 …」의 부분이다. 결코 이 정도의 경고로 충분했는가.

문제의 첫번째는 접착제가 전문업자로부터 일요일 가정에서 즐겨쓰는 사람까지 폭넓게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 이용자가 갖고 있는 환기에 대한 지식은 환기풍과 공조기의 메카니즘의 구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환기풍의 설계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까지 있어 그 범위는 넓다. 그러나 이용자의 설정이 되지 않은 채 경고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경고문의 작성에는 이용자의 설정이 불가능하다. 이용자 설정이 가능한 경우의 경고는

- ① 위험성질을 전달하는 것일 것
- ② 위험을 감소·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명기 할 것

이 요건이 된다. 예를 들면 이 접착제의 경우라면 ①의 경고는 다음과 같다.

증발시키는 것은 유해하고 유독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자주 흡입하거나 피부에 부착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처럼 제품이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한 경고를 해두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율리 문제는 ②의 위험을 감소·제거하기 위한 설명에도 있는 「충분한 환기를 한다」라는 표현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 경고문이지만 사무실이나 호텔, 맨션, 공장 등의 공조설비의 설계에 관계한 사람이라면 그 메카니즘이 어떤 것이고 바깥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타입의 공조설비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환기풍과 어디가 다른지 등의 판단이 되지만 경험에 없는 일반 사람들이나 관리부문 관계자는 그 차이를 모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과연 「충분한 환기를 한다」만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도 얻을 수 있다. 답은 No다. 결국 「충분한 환기」만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충분한 배기의 조건인지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따라 불충분한 설명이라 지적받아도 어쩔 수 없다. 즉, 「충분한 환기」라는 말의 설명부족이었다고 판단되며 이로써는 통상의 일요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할 수 없을 정도의 불충분한 경고가 된다.

경고목적이 위기의 제거, 사고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2경고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지 않으면 안된다.

발생하고 있는 가스는 위험합니다. 가스는 반드시 직접 야외로 배출하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열린 창, 또는 문에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환기풍이나 송풍기는 그 배기를 옥외에서 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가스에 노출되면 기타 중대한 장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고문은 위험을 최소화로 하기 위해 이용자는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00% 만족하는 타당성 있는 경고문을 작성하기 위한 기술,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위험은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어도 이렇게 하면 적어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숙지한 사람이 막중하게 경고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